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4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변경(안 제7조의2 제2항)

○ 기금운용관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에서 “장학기금 소관 부서장”으로, 기금출납원은 “복지기획담당”에서 “장학기금 소관 담당”으로 변경함.

나.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(안 제7조의3)

○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』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2014. 11. 13. ~ 2014. 12. 2.(20일간)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장학기금 소관 부서장”으로, “복지기획담당”을 “장학기금 소관 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기금관리공무원) ① (생략)	제7조의2(기금관리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.	② ----------장학기금 소관 부서장----------장학기금 소관 담당----------.
<신 설>	제7조의3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